

평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평창군의회 의견청취(안)

의안 번호	225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0. 3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풍수해 특성, 피해발생원인, 재해위험도 분석, 저감대책 및 사업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적 지역단위 최상위 방재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현황 보고 및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- 당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일 : 2012. 6. 20(행정안전부)
- ※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

2. 주요내용(주요골자)

가. 사업개요

- 용역명 : 평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
- 용역범위 : 평창군 전지역(A=1,463.7km²)
- 용역비 : 787,950천원(군비 100%)
- 용역기간 : 2017. 10. 17 ~ 2020. 11. 10
- 용역내용
 - 기초 현황자료 조사, 주민 설문조사
 -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및 후보지별 현장조사
 -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구조적·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
 -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
- 용역회사 : (주)이산, (주)삼경

나. 추진상황

- 2017. 10월 : 과업착수
- 2017. 12월 ~ 2018. 03월 : 설문 및 탐문조사 실시(1읍, 7면)
- 2017. 11월 ~ 12월 : 작업계획 수립, 기초현황자료 조사 수집
- 2018. 1월 ~ 12월 : 평창군 기초현황 및 현장 조사(재해유형별)
- 2018. 12월 : 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 선정
- 2019. 10월 :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
- 2019. 10월 ~ 12월 : 중간보고 및 관련실과 협의
- 2020. 2월 :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협의

다. 향후 계획

- 2020. 4월 :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 공청회
- 2020. 6월 : 사업시행계획 수립
- 2020. 8월 : 강원도 협의(의견수렴)
- 2020. 9월 :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최종(안) 작성
- 2020. 10월 : 행정안전부 승인 요청

3. 기대효과

- 재해취약지구 예방
- 효과적인 방재예산 투자
- 지역개발 등 경제적 기대
 - 보호면적 1,718ha, 건물보호 3,290동, 인명보호 5,871명

□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현황

유형	위험요인 분석	위험지구 선 정
하천재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천시설물 상태평가 · 취약지역 분석(범람위험 분석) · 관련계획(하천기본계획,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) · 구조적 및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	98개소
내수재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내수재해 취약지역 분석(자연배제 및 강제배제구역) · 내수배제시설 능력 검토(SWMM 모형) · 관련계획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, 하수도정비기본계획, 관거 및 펌프장 정비사업계획 등) · 구조적 및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	13개소
토사재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토사유출 분석(RUSLE 방법) · 토사재해 우려지역 검토 · 관련계획(산림청, 지자체 사방시설 현황 및 계획) · 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	68개소
사면재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지역단위 분석 : 취약성분석+ 위험성분석(산림청 산사태 위험등급도, 수치지형도 활용) · “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(행정안전부, 2018)”을 준수한 정량적 평가 실시 · 위험지구 사면안정성 검토 수행(한계평형해석) · 구조적 및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	20개소
바람재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풍취약지역 분석(“강풍 및 대설 위험도 산정 기법 개발(2009, 소방방재청)”) · 내풍설계대상 시설 조사 ·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	-
대설재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설위험도 분석(“지역특성을 고려한 재해영향 분석기법 고도화(2015, 국민안전처)”) · 도로, 시설재배지 등 · 상습결빙지역 조사 	2개소
가뭄재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뭄위험도 분석(“지역특성을 고려한 재해영향 분석기법 고도화(2015, 국민안전처)”), 물수지 분석 · 피해가 예상되는 평창군 전지역 · 가뭄으로 인한 급수 제안 지역 조사 	2개소
기타재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설물 상태평가 · 취약지역 분석 	1개소
소 계		204개소

관계법령 발취

□ 자연재해대책법 [시행 2019. 4. 1] [법률 제16172호, 2018. 12. 31, 타법개정]

제16조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(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.

이하 이 조, 제16조의2,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)·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·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(이하 "시·군 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·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·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(이하 "시·도 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 및 시·도지사는 각각 시·군 종합계획 및 시·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 및 시·도지사가 각각 시·군 종합계획 및 시·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. 다만,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기본계획 및 도시·군관리계획의 수립·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기본계획 및 도시·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·군 종합계획과 시·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⑥ 시·군 종합계획과 시·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2(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는 매년 시·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·군 시행계획(이하 "시·군 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(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"관계 행정기관등의 장"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·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·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·도 시행계획(이하 "시·도 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·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·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·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·군 시행계획 및 시·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 시행계획 및 시·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3(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·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